

■ 인증서 발급 (반드시 청약 전 미리 준비하세요)

						
공공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 인터넷 청약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09:00~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모집공고 단지 청약연습' 또는 '청약가상체험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가상으로 미리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자동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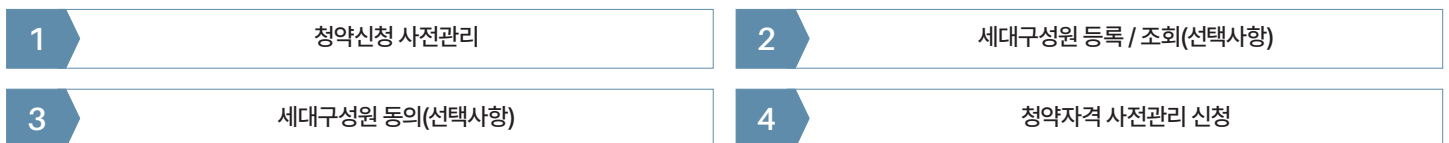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는 기본 조회되므로 세대원의 자격 여부는 청약자 본인이 판단하여야 함.

■ 청약자격 사전 관리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입주자모집 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이 됩니다.
- * '3. 세대구성원 동의'의 경우 세대원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세대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 일정 및 자격 안내



■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14.(금)** 입니다.

■ 청약 신청 일시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	2026.08.24.(월)	2026.08.25.(화)	2026.08.26.(수)	2026.09.01.(화)
방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보주택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보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보주택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청약 신청 자격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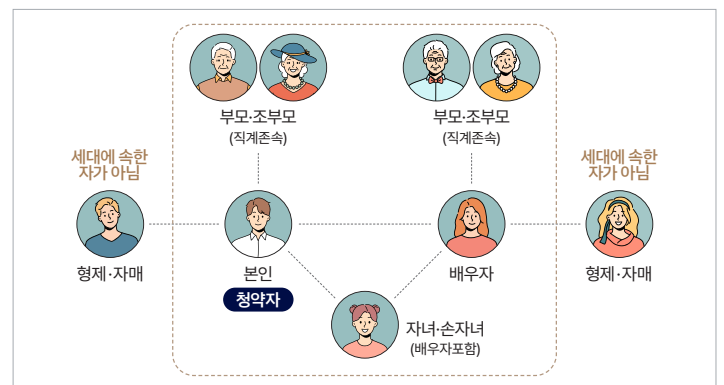
■ 면적별 청약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부천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 가능 면적 (전용면적)			
				84m ² (84A ~ 84F)	113m ² (113A / 113B)	121m ²	PENT (153P / 187P / 192P)
85m 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X	X	X
102m 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	X	X	X
135m 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	○	○	X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 '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 범위가 확대되어 '사위·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구성 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청약 시 세대원 판단 기준



■ 한국부동산원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동의 필요)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Click

특별공급 제한, 가점제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확인

* 주택소유 확인 일반공급 가점제·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Click

건축물대장정보·분양권 거래내역·재산세 정보확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 배우자와 통장기간을 합산해 청약하신다면, 배우자 '순위확인서'로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Click

청약통장 가입일·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확인

청약신청 및 청약자격확인인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접속 및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동인증서 등)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일반공급 청약 자격 안내



■ 일반공급 1순위 청약 Check Point

1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 등(동거인, 외국인)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세대 내 가족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본 아파트 공급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부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이나, 경쟁발생 시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3	유주택자 1순위 청약가능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재당첨 제한 無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2년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가능)

■ 일반공급 청약 순위

구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	①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② 지역/면적별 예치 기준금액 충족
2순위	기간/금액 상한 없음
	①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② 다주택자 가능 ③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 면적별 청약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부천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 가능 면적 (전용면적)			
				84m ² (84A ~ 84F)	113m ² (113A/113B)	121m ²	PENT (153P/187P/192P)
85m 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X	X	X
102m 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	X	X	X
135m 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	○	○	X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	○

■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가점기준	점수	가점기준	점수	가점기준	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0명	5	6개월 미만	1
1년 미만	2	1명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1년 이상~2년 미만	4	2명	15	1년 이상 ~ 2년 미만	3
1년 늘 때마다 2점 가산	-	3명	20	1년 늘 때마다 1점 가산	-
		4명	25		
14년 이상~15년 미만	30	5명	30	14년 이상~15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6명 이상	35	15년 이상	17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변경 불가)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 시,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접수일까지 충족

■ 일반공급 청약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1)지역 → (2)가점 → (3)청약통장 가입기간 → (4)추첨 - 1순위 추첨제: (1)지역 → (2)무주택자 우선공급 → (3)추첨 ·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전용면적 85m² 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85m² 초과: 추첨제 100%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가점제 실시 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합산 가능('24.03.25. 시행)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청약자격 미속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2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본 아파트 공급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부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이나, 경쟁발생 시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3

부부 중복청약 가능

단, 중복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건(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유효)은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자격 요약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본자격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혼인기간 7년 이내	2세 미만의 자녀 (임신, 입양)가 있는 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주택소유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주 (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지역우선	-	① 부천시 거주자 → ② 수도권 거주자				
세대주 여부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주
면적	전용 85㎡ 이하	전 주택형	전용 85㎡ 이하	전용 85㎡ 이하	전용 85㎡ 이하	전 주택형
당첨자 선정기준	-	① 거주지역 ② 배점 ③ 미성년 자녀수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 ⑤ 추첨	① 소득 ② 순위 ③ 거주지역 ④ 미성년 자녀수 ⑤ 추첨	① 소득 ② 거주지역 ③ 추첨	① 소득 ② 거주지역 ③ 추첨	① 지역 ② 가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④ 추첨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 2항(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출산특례] :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처분서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전 처분완료), 신혼부부, 신생아 추첨제 청약 시 부동산가액 산정 시 주택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청약자간 관계	중복청약 유형	중복당첨 시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세대원	특별공급 + 특별공급 [가능]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 [가능]	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
	세대원	특별공급 + 특별공급 [불가능]	1건이라도 당첨 시 모두 부적격
		특별공급 + 일반공급 [가능]	모두 유효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구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22	8	35	9	18	45	-	-	-	13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2	8	35	9	18	45	22	8	18	185
신혼부부 특별공급	33	13	53	13	27	66	-	-	-	20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2	11	3	5	14	6	2	5	55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6	25	6	12	32	-	-	-	96
신생아 특별공급	22	8	35	9	18	45	-	-	-	137
합계	121	45	194	49	98	247	28	10	23	815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안내



■ 주택형별 대상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84A	84B	84C	84D	84E	84F	합계
국가유공자	4	1	6	1	3	7	22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	5	1	2	5	1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5	1	2	5	17
중소기업 근로자	4	1	6	1	3	10	25
경기도 장애인	4	2	7	3	4	7	27
서울시 장애인	2	1	3	1	2	5	14
인천시 장애인	2	1	3	1	2	6	15
계	22	8	35	9	18	45	137

■ 청약 체크 포인트

해당기관으로 신청 필수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장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인터넷 청약 신청 필수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부부간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부부에 한하여 특별공급 중복청약 허용 * 단, 중복 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경기도	청약통장 필요없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대상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합계
세대수	22	8	35	9	18	45	22	8	18	185

■ 청약 체크 포인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당첨이력 有 필수) 현재 주택 소유 중이라도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부간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부부에 한하여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 단, 중복 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처리(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해당시·도(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배점항목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안내



■ 주택형별 대상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합계
세대수	33	13	53	13	27	66	-	-	-	205

■ 청약 체크 포인트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특례·출산특례	· 혼인특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본인 기준 1회)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당첨이력 유 필수) 현재 주택 소유 중이라도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부간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부부에 한하여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 단, 중복 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처리(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분		
· ③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기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 10,547,268원	8,802,203원 ~ 12,323,083원	9,326,986원 ~ 13,057,779원	9,906,264원 ~ 13,868,768원	10,485,542원 ~ 14,679,757원	11,064,820원 ~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 12,054,021원	10,562,643원 ~ 14,083,523원	11,192,383원 ~ 14,923,176원	11,887,517원 ~ 15,850,021원	12,582,650원 ~ 16,776,866원	13,277,784원 ~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15,490,748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대상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합계
세대수	7	2	11	3	5	14	6	2	5	55

■ 청약 체크 포인트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분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출산특례	·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당첨이력 有 필수) 현재 주택 소유 중이라도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부간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 청약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부부에 한하여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 단, 중복 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처리(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①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기타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대상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합계
세대수	15	6	25	6	12	32	-	-	-	96

■ 청약 체크 포인트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 현재 및 과거 모두 주택소유 無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자로서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어야 함)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소형저가 무주택으로 인정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부부간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부부에 한하여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 단, 중복 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처리(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단독세대'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 12,054,021원	11,442,864원 ~ 14,083,523원	12,125,082원 ~ 14,923,176원	12,878,143원 ~ 15,850,021원	13,631,204원 ~ 16,776,866원	14,384,266원 ~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1인 가구	160% 이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	~ 12,054,021원 ~ 14,083,523원 14,083,524원 ~	~ 14,923,176원 ~ 14,923,176원 14,923,177원 ~	~ 15,850,021원 ~ 15,850,021원 15,850,022원 ~	~ 16,776,866원 ~ 16,776,866원 16,776,867원 ~	~ 17,703,710원 ~ 17,703,710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선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입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대상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합계
세대수	22	8	35	9	18	45	-	-	-	137

■ 청약 체크 포인트

2세 미만의 자녀 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산특례	·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당첨이력 有 필수) 현재 주택 소유 중이라도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소유권이전등기 전)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부부간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부부에 한하여 특별공급 중복청약 허용 * 단, 중복 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

■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신규취업자·이직자·신규사업자·프리랜서 등의 소득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청약 관련 기준에 따른 별도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 12,054,021원	11,442,864원 ~ 14,083,523원	12,125,082원 ~ 14,923,176원	12,878,143원 ~ 15,850,021원	13,631,204원 ~ 16,776,866원	14,384,266원 ~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보유 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유류·미가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